

캄보디아(Cambodia)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및 현행법 : 1997년(노동); 2002년(사회보험), 2007년 시행; 2011년(빈곤가구식별); 2016년(건강보험)

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(현금질병 및 출산급여, 의료급여), 사용자부담(현금출산급여), 사회부조(현금출산 및 의료급여)제도

3 적용대상

- 사회보험 : 민간 부문 근로자
 - 예외 : 자영자, 가사노동자, 외교관, 국제기구 근로자, 항공 및 해양운송 종사자
 - 공공 부문 근로자, 참전용사, 군인을 위한 특별제도
- 사용자부담 : 민간 부문 근로자
 - 예외 : 자영자, 가사노동자, 외교관, 국제기구 근로자, 항공 및 해양운송 종사자.
 - 공공 부문 근로자, 참전용사, 군인을 위한 특별제도
- 사회부조(출산수당) : 정규부문 근로자, 일주일에 8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비정규직 근로자, 임시노동자, 계절노동자
- 사회부조(의료급여) : 캄보디아의 빈곤한 거주민

4 재원조달

- 가입자
 - 사회보험 : 없음
 - 사용자부담 : 없음
 - 사회부조 : 없음
- 자영자
 - 사회보험 : 적용불가
 - 사용자부담 : 적용불가
 - 사회부조 : 적용불가

- 사용자
 - 사회보험 : 월 가입소득의 2.6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은 200,000 린(riels)임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은 1,200,000 린(riels)임
 - 사용자부담 : 총 금액
 - 사회부조 : 없음
- 정부
 - 사회보험 : 없음
 - 사용자부담 : 없음
 - 사회부조 : 총 금액

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- 현금질병급여(사회보험) : 현재 근무 중이어야 하며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6개월의 가입 기간을 가졌어야 함. 최소 7일간 지속된 질병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진단서를 제공해야 함
- 현금출산급여(사회보험) :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9개월의 가입기간을 가졌어야 함
- 현금출산급여(사용자부담) : 동일한 사용자 하에 12개월의 지속적인 근무경력을 가졌어야 함
- 현금출산수당(사회부조) : 요구조건이 없음
- 의료급여(사회보험) :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6개월 또는 근로 중지 시 최소 연속 2개월의 가입기간을 가졌어야 함.(보험적용은 근로 중지 2개월 후까지 지속됨)
- 의료급여(사회부조) : 소득 및 자산조사를 충족시키거나 현재 국가사회보장기금에 등록되어 있는 비공식 부문 근로자여야 함

6 급여종류별 지급액

- 질병 및 출산급여
 - 질병급여(사회보험) : 가입자 지난 6개월간의 일평균소득의 70%가 최대 180일 동안 지급됨
 - 출산급여(사회보험) : 가입자 지난 6개월간의 일평균소득의 70%가 90일 동안 지급됨
 - 출산급여(사용자부담) : 근로자 총 소득의 50%가 90일 동안 지급됨
 - 출산수당(사회부조) : 일회 출산 당 최대 3명의 자녀에 대해 각각 400,000 린(riels)의 일시금이 지급됨

○ 근로자의료급여

- 의료급여(사회보험) : 의료급여는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서비스, 응급치료,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, 산후조리, 재활, 알선 서비스, 기본 치아관리, 일부 예방 서비스를 모두 포함함. 의료급여는 12개월 기간 동안 최대 180일 간 제공됨
- 의료급여(사회부조) : 의료급여는 공공시설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, 입원, 외래환자 및 응급치료, 필수약품들을 포함함

○ 피부양자 의료급여

- 사회보험 : 의료급여에 대하여 피부양자는 보장받지 않음
- 사회부조 : 정보 미제공

7 관리운영기관

○ 노동 및 직업교육부(Ministry of Labor and Vocational Training)

- <http://www.mlvt.gov.kh/>
-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전반적 감독 제공

○ 국가사회보장기금(The National Social Security Fund)

- <http://www.nssf.gov.kh/>
- 사회보험제도 관리

○ 보건부(The Ministry of Health)

- <http://moh.gov.kh/>
- 의료급여에 대한 전반적 감독 제공

○ 기획부(The Ministry of Planning)

- <http://www.mop.gov.kh/>
- 사회부조 의료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가정 파악활동 감독

○ 의료형평성기금(Health equity fund)

- 사회부조 의료급여 관리

<2018년 ISSA 자료>